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상장주식수 부족 종류주식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우선주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자기거래의 타회원 위탁 허용)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9/22 개정 · 2020/9/28 시행)[1)]

1) 개정 이유

□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장주식수가 적은 종목에 대해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단기과열종목 지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한 투자자 주의환기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주식수 부족 종류주식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56조의4)

—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종류주식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우선주의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제133조, 제133조의2, 제134조)

—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50% 초과)되는 종류주식의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 종류주식은 가격괴리율 요건에만 해당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 투자경고 · 투자위험종목과 단기과열종목의 중복 지정 방지(제133조의2)

— 익일 투자경고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산출하지 않도록 변경

□ 투자위험고지 등(제110조)

—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고지 대상 종목에 단기과열종목, 정리매매종목 추가

□ 기타(제6조의3, 제41조의2 및 제56조의3)

— 종류주식 가격이 해당 보통주식 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 기세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1.5배 초과로 변경

---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제6조의3, 제110조,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

— 단일가매매 대상 종류주식종목에 대해 변동성 완화장치 적용 배제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9/21 개정 · 2020/12/7 시행)[2)]

1) 개정 이유

□ 우선주의 이상 급등락 방지를 위해 매매체결방법의 변경과 함께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변경 · 신설하고, 이상 급등 종목 등에 대한 투자자 주의환기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우선주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50% 초과)되는 종류주식의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록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신설

• 종류주식은 가격괴리율 요건(50% 초과)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 상장주식수 부족(50만주 미만) 종류주식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제28조의5, 제28조의8)

□ 위탁주문의 처리에 있어 투자위험의 고지 등(제42조)

—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고지 대상 종목에 단기과열종목, 정리매매 종목 추가(제42조)

□ 기타 조문정비(제2조,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28조의7)

— 종류주식 가격이 해당 보통주식 가격을 1.5배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 기세를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

— 익일 투자경고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산출하지 않도록 변경

—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에 대해 변동성 완화장치 적용 배제

— 단기과열지정 품절주 요건 대상(보통주) 및 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 포함) 명확화

2) 단 제28조의5, 제28조의7, 제28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9/3 개정 · 2020/9/7 시행)[3)]

1) 개정 이유

□ 거래소 회원인 금융투자업자간 주문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업자간 협업을 지원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업무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ETF선물을 추가 상장하여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의 거래수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종목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함

□ 파생상품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식선물·옵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기거래의 타회원 위탁 허용(제48조, 제114조~제116조, 제119조)

— 회원은 고유재산운용업무에 한하여 다른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주문을 위탁받아 호가를 입력 가능

- 고유재산운용업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함
- 호가 입력 시 위탁거래 및 자기거래의 구분에서 '타회원 위탁거래'(13번) 구분코드 및 위탁한 회원사의 '회원사번호'를 함께 입력(별표 6 호가내용입력코드)

— 타회원의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원사의 주문을 위탁받는 계좌에 관한 사항(개설, 변경 또는 폐쇄 등)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

-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 전까지는 서면으로 5거래일 전에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신고양식 별지 제17호 참조), 이후 시스템을 통한 신고로 대체(부칙 제1조 참조)

— 수탁회원은 호가 입력 시 신고 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문을 수탁거부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회원은 수탁거부 사유의 해당 여부에 대한 점검의무가 있음

— 고유재산운용업무를 거래하던 자기거래 계좌와 타회원을 통해 거래하는 위탁계좌 간 미결제약정의 이관을 허용

□ 신규 ETF선물 추가상장(별표 1의4 및 별표 6)

— ETF시장의 위험관리 등 강화를 위한 ETF선물 추가상장

3) 다만, 제114조에 따라 회원이 그 파생상품계좌에 관한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는 신고 및 협의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전 파생상품계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

- 신규상장 대상 기초 ETF는 'KODEX Top5PlusTR ETF(삼성 KODEX Top5Plus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하며, 투자자들이 현물 보유물량에 대한 헤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설정
- 현행 ETF선물거래의 기초ETF : KODEX 삼성그룹 ETF, TIGER 헬스케어 ETF, ARIRANG 고배당주 ETF, TIGER 차이나CSI300 ETF

□ 주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수시변경 개선(제162조의2)

—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수시변경 조치가 보통주식 총수 10분의 1 이상 변경된 경우 거래승수 조정 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거래승수가 조정된 종목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여 표준승수가 적용되는 종목만 거래되는 시점에도 수시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